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9월 4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서근필)

### 가. 제안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운영 기준을 마련,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가. 선별장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에 둬.(안 제2조)

- 나.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함.(안 제4조)
- 다. 선별장은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 라.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년 기간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수탁자는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의 수립·시행, 재산의 목적 외 용도 금지, 조례 등의 준수 등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8조)
- 바.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위탁 취소 및 선별장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년 후 재공고하여 위탁운영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는데 단서조항을 삽입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위탁기간이 2년이 만료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운영실적 등 종합평가하여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 그동안 노하우를 참고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됨.
○민간위탁시 재활용 선별원 노조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였으며 노조측의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였음.
○민간위탁시 시의 운영비 절감은 얼마인가?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시 약 6억~7억 정도 시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음
○현재 고용되는 재활원 선별원의 향후 취업 대책은 있는지?	○재활용 선별원 모두가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이직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가로환경 미화원 많이 부족할 실정으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선별업체가 분리되어 있어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위탁운영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협약서 작성시 구체적인 재활용품 품목 및 선별장 운영 등 모든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음.
○민간위탁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하기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시 수익이 적어 운영하던도중 도산하는 업체가 발생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민간위탁 업체 선정시 참고하겠으며 민간위탁업체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대안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선별장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별장”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업무) 선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5.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
6.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히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93호
의결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안년월일 : 2008. 9. 4.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조례에서 민간위탁 조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나
- 부천시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시 경쟁력 확보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한 공개경쟁모집 등으로 위탁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

## 2. 주요골자

- 위탁기간 및 재위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개경쟁 모집 토록 하여 투명성 확보 경쟁력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7조)
- 권고(의견) 사항  
제10조제2호에서 정한 선별장 운영능력에 대하여 제12조(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칙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것.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 ~ 제12조 생략	제1조 ~ 제6조 원안과 같음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6조제2항</u>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 ~ 제12조 원안과 같음

[수정안 포함]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선별장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별장”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업무) 선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5.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

6.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히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化) 등의 중간처리(제7조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

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제46조(폐기물 재활용 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7.8.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 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8.3>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⑤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⑥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⑦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8.3>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8.3>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8.3.21>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b>부천시</b> <b>환경연합회</b> (성광용역주식회사) (강서실업주식회사) (경남기업주식회사) (도시환경살업주식회사) (동운환경주식회사)	○ 제5조제5호 중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에서 “적정” 문구 삭제 (선별 잔재물의 처리는 현재 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적정처리 시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지배적이므로 시와의 협의 하에 처리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b>미반영</b> · 조례 규정 중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는 소각장 반입과 매립지로 수송될 잔재물의 분리·운송 및 처리비용 부담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잔재물 처리 비용은 위·수탁자 간의 협약서에 명시될 내용으로 수탁자가 전부 부담되는 비용이 아님.
”	○ 제5조에 제2항 추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사항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한다.	○ <b>미반영</b> ·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명시할 수 없으며 운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연히 위·수탁자 간의 협약서에 명기될 내용임.
”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5년 이상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자 (폐기물처리업은 모든 폐기물을 포함하는 처리업을 지칭하므로 재활용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일부분이므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업이 해당되며, 안정적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5년 이상 처리 실적을 갖춘 자가 대상이 되어야함)	○ <b>미반영</b> · 자격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 모집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공고문에 게시될 사항이며 · 업무와 연관있는 수탁업체의 운영능력 등은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p><b>부천시</b> <b>환경연합회</b> (성광용역주식회사) (강서실업주식회사) (경남기업주식회사) (도시환경살업주식회사) (동운환경주식회사)</p>	<p>○ 제7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수탁자의 지속적 사업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계약 3년으로, 매년 시책이나 위수탁자간의 변경사안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특수계약 1년으로 함)</p>	<p>○ 미반영 ·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재활용품 시장의 가격변동과 수탁업체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재위탁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성에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p>